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임용)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정수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 단 의원 정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정책지원관은 7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며, 그 외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

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둔다.

②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배정 등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제4조(근무기간)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직무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제2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
2.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5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근무 실적평가)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을 평가할 때 명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 재계약 및 근무실적평가에 지휘위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의정팀 이수경 (02-450-2831)

붙임	관계법령
-----------	-------------

법규명	지방자치법
------------	--------------

<p>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p> <p>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p> <p>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법규명	지방자치법 시행령
------------	------------------

<p>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p> <p>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 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p> <p>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p>

법규명	지방공무원 임용령
------------	------------------

<p>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p> <p>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p> <p>1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p> <p>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p> <p>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p>
